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6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1.

발 의 자 : 이수진(비) • 김두관 • 김정호

김주영 • 민형배 • 신동근

안호영 · 위성곤 · 윤재갑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정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운영토록 하고 있음

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·감정·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있도록 '항만종합서비스업'을 신설하고자 함.

또한,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8항, 제26조의2 및 제27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이 법에서 "항만종합서비스업"이란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, 제3조제2호의 검수사업, 같은 조 제3호의 감정사업 및 같은 조제4호의 검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이 경우 항만용역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)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제6조 및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자본금,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'항만종합서비스업자'라한다)에 대하여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을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,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.

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·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"항만운송사업자"는 "항만종합서비스업자"로 본다.

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9(정부 등의 지원) 국가,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, 검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⑥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⑥ (현행과 같
	음)
⑦ 이 법에서 "관리청"이란 항	7
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	
업의 등록, 신고 및 관리 등에	
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	
관청을 말한다. <u>다만, 제3조제3</u>	<u><단서 삭제></u>
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	
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	
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⑧ 이 법에서 "항만종합서비스
	업"이란 제2조제4항에 따른 항
	만용역업, 제3조제2호의 검수
	사업, 같은 조 제3호의 감정사
	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검량사
	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
	한다. 이 경우 항만용역업의
	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항만종합서비스업의
	등록 등) ① 항만종합서비스업
	을 하려는 자는 제6조 및 제26

조의3제7항에 따른 자본금, 노 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 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'항만종합서비스업 자'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2조 제8항의 각각의 사업을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,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.
-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 ·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제2 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3 조제1항 중 "항만운송사업자" 는 "항만종합서비스업자"로 본 다.

제27조의9(정부 등의 지원) 국가,
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
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육성을
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
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지

<신 설>

원을 할 수 있다